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 토 보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#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최정훈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
○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·의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절차를 개선하고,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위임 법령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명 오기를 정정함(안 제1조 및 제3조)
-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수를 확대함(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)
-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에 도의회 추천받은 사람을 포함함  
(안 제4조제3항)
-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공유재산 취득 시 취득대상지 선정 근거를 명시함  
(안 제12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기존

“9명”에서 “10명 이상 15명 이하”로 확대하고,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위원 중 충청북도의회 추천을 받은 사람을 2명 포함하도록 하며,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취득대상지의 선정 근거를 첨부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○ 안 제4조제1항과 관련하여,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) 제16조(공유재산심의회)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수에 관하여 “7명 이상 15명 이하”로 정하고 있고, 본 조례는 그 수를 “9명”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나,
- 공유재산심의회 형식적 운영을 막고,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수를 최소 6명에서 최대 11명까지 확대하여, 공유재산심의회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**【참고】 타 시도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수 규정**

| 시도 | 규정           | 시도 | 규정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|
| 서울 | 없음           | 경기 | 7명 이상 15명 이하 |
| 부산 | 7명 이상 15명 이하 | 강원 | 15명 이내       |
| 대구 | 7명 이상 15명 이하 | 충남 | 15명 이하       |
| 인천 | 없음           | 전북 | 없음           |
| 광주 | 없음           | 전남 | 7명 이상 15명 이하 |
| 대전 | 없음           | 경북 | 7명 이상 15명 이하 |
| 울산 | 7명 이상 15명 이내 | 경남 | 7명 이상 15명 이하 |
| 세종 | 7명 이상 15명 이하 | 제주 | 없음           |

\*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, 법에 따라 7명 이상 15명 이하

○ 안 제12조제4항과 관련하여,

- 법 제10조의2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제출 시기, 지방의회 의결 및 취소·변경 시 절차 등을 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) 제7조는 공유재산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,

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변경계획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 받아야 하는 경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.

- 영 제7조제2항은 ▲사업목적 및 용도, ▲사업기간, ▲소요예산, ▲사업규모, ▲기준가격 명세, ▲계약방법 등을 “명확히 해야”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, 조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.

- 이에 따라 안 제12조제4항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려는 대상지를 선정한 근거를 첨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다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그 밖에 안 제1조는 위임조례인 본 조례의 상위법률을 분명히 하기 위해 목적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고,

- 안 제3조제1항 및 안 제5조제2항제1호는 법령명 오기를 정하려는 것이며,
- 안 제12조제1항은 안 제4조제1항 후단이 신설됨에 따라 앞선 조문에서 약칭을 하게 됨에 따라 기존 약칭을 삭제하려는 것이고,
- 안 제40조제1호는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(제10판)에 따라 법령명 표기 방식을 정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음(p.242 참조).